

Deloitte.

韓

福

樂

2024.05 | 제6호

# 기업지배기구 *Insights*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기업지배기구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기업지배기구 *Insights*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 I. 전문가 기고

- ① ESG 공시의 제도화 현황 및 시사점 • 4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유승원 교수

## II. CCG 아젠다

- ①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이사회 의장의 미래 과제 • 9
- ② FY2023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19

## III. 데이터 포인트

- ① 글로벌 vs. 국내 주요기업 여성 이사진 비중 및 시사점 • 33

## IV. 주요 규제 동향

- ① 금융당국의 기업 Value-up 프로그램 실행 진행경과 • 39
- ② 2024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및 지배기구 고려사항 • 45

## V. FAQ

- ① 2023 ACGA 한국 기업지배구조 평가 동향 • 50
- ②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 52

## VI. 주요행사

- ① 2024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 54
- ② 이사회 거버넌스 설문조사 - 'AI/생성형 AI에 관하여' • 55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본 센터의 다양한 발간물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I. 전문가 기고 ①

## ESG 공시의 제도화 현황 및 시사점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유승원 교수

### ESG 자율공시의 현황

2000년대 초반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관심은 금융 기관들을 시작으로 투자 결정 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 요소를 고려하는 ESG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등 다양한 ESG 이니셔티브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재무적 성과, 윤리경영, 위험관리, 지배구조 등과 연계된 ESG 요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SG 공시는 환경 보호, 사회적 공헌, 투명한 지배구조의 실천을 통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 리스크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성실한 ESG 경영의 실천 및 투명한 공시는 ESG리스크의 안정적 관리와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형성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게 된다. 많은 국내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팬더믹과 국제정세의 불안이라는 불확실한 환경하에서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면서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ESG 공시는 기업의 ESG 평가등급이 높을수록 재무성과, 기업가치와 회계투명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형식적인 내용의 반복을 통한 단순 홍보수단으로 인식되거나 그린워싱의 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인 부정적인 보고사항을 축소, 누락하거나, 보고마다 보고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승재와 심재연, 2024).<sup>1)</sup> 또한 여전히 ESG 평가결과가 평가기관별로 상이하거나 평가기준이 모호하는 등 평가과정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도출된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배창현 외 2021).<sup>2)</sup> 더욱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한국ESG기준원(KCGS)와 MSCI와 같은 ESG평가기관의 등급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관리, 작성되면서 기업의 ESG 경영현황을 이해관계자와 시장에 의사소통 한다는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물론 ESG 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작성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ESG 평가기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서로 상이하고, 이에 따라 동일 기업에 대한 평가기관 간의 평가가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등 평가가 도리어 불확실성을 높이는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이승재, 심재연, 2024,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제3자 검증 공시현황: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 53권 제1호: 225-245

2) 배창현, 김태동, 신세찬, 2021, 비재무적 측정지표를 활용한 연구동향 및 ESG 이슈, 회계저널, 제30권 제2호: 235-276

# I. 전문가 기고 ①

## ESG 공시의 제도화 현황 및 시사점

### ESG 공시 제도화 현황

따라서 ESG 공시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ESG 공시 및 평가기준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첫째, 2021년 설립된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GRI, TCFD, SASB 등을 기반으로 ESG 공시기준을 개발하여 의무공시 기준인 IFRS S1과 S2을 2023년 발표하였다. ISSB의 목표는 기업의 당면한 ESG 리스크와 이에 대한 기업의 ESG 노력이 현재와 미래 재무적 성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공시하도록 하며, ISSB의 글로벌 일관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여 다국적 기업들이 여러 규제를 따르는 복잡성을 줄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EU는 ESG 공시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이며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ESG 공시에 중소기업도 포함하여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한 ESG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시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의 SEC는 상대적으로 자발적 ESG 공시를 장려하는 접근 방식을 취해왔으나, 최근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을 통과시켜 ESG 공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scope 3 공시는 기업의 선별적 공시를 허용하는 등 자율성이 확대된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에 대해 반대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여전히 SEC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보 공시를 강화하여 투자 결정에 필요한 기후 관련 리스크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ISSB, EU, SEC의 ESG 공시 규제는 각각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모두 기업이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회계기준원 내에 KSSB(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설립하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지난 4월에 발표하였다. 공시 초안은 IFRS S1과 S2에 기반한 의무공시 기준과 정책목표에 따른 추가 공시(선택)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공시 초안은 ISS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후 공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재무제표 보고와 마찬가지로 연결기준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SEC 공시기준에 직접 영향을 받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0개의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공시 기준 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규제에 모두 대비가 필요하다.

# I. 전문가 기고 ①

## ESG 공시의 제도화 현황 및 시사점

### ESG 공시 제도화에 대한 준비 현황

ESG 공시에 대한 기업의 준비상황을 돌아보면 2021년에만 해도 S&P 500 기업의 약 95%가 ESG 정보를 공시하고 있었지만, 딜로이트의 전세계 40개국 소재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 등 ESG 관련사안에 체계적으로 대응 중인 기업은 약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2022년 딜로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ESG 대응의 많은 경우는 단기간 실천가능한 소극적 조치에 편중되며, 약 25%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사회 또는 경영진으로부터 ESG 대응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ESG 공시에 대한 제도화가 가시화되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023년 허니웰(Honeywell)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는 ESG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고, 82%는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ESG 보고 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75%가 보고서 작성을 낙관하고 있었다.”<sup>4)</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ESG 공시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외부기관의 조력을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던 초기에 비해 많은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글로벌 공시 규제에 대한 이해 및 대비를 위한 조직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업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는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상공회의소가 2023년 발표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설문에서 80%가 넘는 대기업이 지난 5년간 공시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느끼고 있으며, 불필요한 항목 폐지나 유연한 제도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sup>5)</sup>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100개사의 80% 정도가 1억 이상의 비용을 ESG 공시에 지출하고 있고 대부분 외부전문가에 의존하여 공시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설문으로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기업이 scope 3 및 연결기준을 포함한 의무 공시를 연기 또는 완화하고 공시의 업종별 세부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특히 2023년 글로벌 정치·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경영환경이 빠르게 나빠지면서 기업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며 2025년 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던 우리나라의 ESG 의무공시 계획 자체가 2026년 이후로 1년 이상 연기되었다.

3) 감사위원회의 ESG 대응 관련 글로벌 현황 및 시사점, 백인규 딜로이트 ESG센터장(2022년 감사위원회 정기 포럼 발표자료, 원자료: The Audit Committee Frontier – addressing climate change (Deloitte, 2021); S&P 500 and ESG Reporting (CAQ, 2021); Deloitte 2022 CxO Sustainability Report (2022)

4) “허니웰 & 딜로이트 나란히 설문결과 발표, 기업의 ESG 공시 준비는?” 임팩트온(Impact ON)(<http://www.impacton.net>), 2023.10.03

5)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23.04.05

6) “대기업도 준비 힘들다...국내기업 절반이상, ESG 의무공시 연기해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23.08.28

# I. 전문가 기고 ①

## ESG 공시의 제도화 현황 및 시사점

그러나 이러한 ESG 공시 의무화의 연기가 제도화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존의 자율적인 ESG 공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불신이 상존하고 있고,<sup>7)</sup> 환경을 비롯한 다양성·공정성·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 생물다양성 보전 등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투명한 ESG 공시의 요구는 커질 것이고 ESG 공시 및 평가기준의 제도화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 ESG 공시의 제도화에 적극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

ESG 공시의 제도화 방향은 아직도 유동적이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기업, 그리고 정책당국 간의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논의의 중심에는 먼저 기업의 공시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시 기준의 구체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해 ISSB의 기준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종별 세부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시기준의 불확실성은 낮춰가는 노력이 KSSB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ESG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검증과 인증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ESG 공시에 대한 내부 감사와 통제 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와 같이 외부 검증을 통해 공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공시 내용의 검증 및 인증과정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SG 전담부서를 설립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자원이 있는 대기업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준비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원 및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기업의 어려움은 결국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부실화를 가져오고 이해관계자의 ESG 공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유관기관 그리고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 모두가 ESG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식 및 기술적 지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들이 ESG 공시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ESG 공시에 필요한 환경 정보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수집, 관리하기 위한 IT 시스템을 개발 및 도입, 그리고 운영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기업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당국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ESG 공시에 대한 규제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러한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 해서 ESG 공시 전략을 수정하는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7)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 C사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하여 용기를 제작한다는 캠페인을 펼쳤지만, 이면에는 전세계 플라스틱 오염물질 배출 1위 브랜드라는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

# I. 전문가 기고 ①

## ESG 공시의 제도화 현황 및 시사점

ESG 공시와 관련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의 역할 제고도 필요하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재무보고 및 내부부정의 감시, 감독이라는 전통적 기능을 넘어서 ESG 리스크가 기업의 장단기 생존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SG 경영이 정착하고 기업의 지속성장에 도움이 되려면 지배구조의 이해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지배구조의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ESG 경영전략의 실천을 위해 기업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인 임직원 대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 및 공시 요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ESG 공시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공시를 시작으로 법정공시로 이어지는 ESG 공시 일정이 1년 이상 연기된 이후 ESG 공시 제도화의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로드맵의 부재는 ESG 공시 제도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고, ESG 공시에 대한 규제당국과 기업의 진정성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의문을 표시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기업에게도 로드맵의 부재는 향후 ESG 공시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기업의 장기적 전략을 준비하는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시장에 존재하고 공시 내용에 대한 이견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로드맵의 부재는 시장 전체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제도화 로드맵에 조기에 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ESG 공시 제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ESG 공시의 재도화 현황과 몇몇 시사점을 알아봤다.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와 기업, 검증기관, 그리고 규제당국이 모두 ESG 경영과 공시에 대한 이해와 인식 수준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전문가 기고' 섹션의 콘텐츠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II. CCG 아젠다 ①

###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이사회 의장의 미래 과제<sup>1)</sup>

#### 요약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 오늘날 이사회 의장은 기후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신기술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여 당면 과제의 해결과 조직의 장기적인 성공 간의 균형을 잡는 과제를 부여받았음
- 기후 관련 당면과제의 다면적 특성으로 인해 이사회는 기후문제에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한편, 이사회 의장은 리더이자 경영진의 전략적 파트너, 조직의 대변인 및 분위기 조성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이에 본고는 '22년부터 '24년까지 17개국, 230명의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얻은 인사이트를 종합하여 기후변화 아젠다,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경영 감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제공하고자 함
- 이사회와 이사회 의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성과 기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미래의 이사회 의장이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

지정학적 불안정성, 경제적 불확실성, 높아지는 이해관계자의 기대치, 기술 발전의 가속화 속도가 비즈니스 운영과 전략에 점점 더 강력하고 밀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사회에 대한 요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사회는 기후변화와 같이 매우 중요한 다른 전략적 우선순위에 집중하면서 이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2023년 딜로이트 글로벌이 전 세계 최고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조직이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을 수용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sup>2)</sup> 응답자의 약 40%는 기후변화가 비즈니스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일부라고 예상했으며, 기후 아젠다를 이행하기 위한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를 마련한 기업은 아직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응답자의 33%만이 자신의 조직에서 고위 리더의 보상을 환경 지속가능성 성과와 연계하고 있다고 답했다.<sup>3)</sup> 전반적으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기후 문제 아젠다의 진전을 위해서는 더 큰 긴급성과 책임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1) Deloitte Global Boardroom Program, 「Climate change governance and the board chair of the future: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ward a low-carbon future」, 2024.03

2) Deloitte, Deloitte 2023 CxO Sustainability Report: Accelerating the green transition, accessed July 31, 2023; Simon Cleveland, Kristen Sullivan, Veronica Poole, and Yasmin Chahed, "Overcoming the hurdles to integrating sustainability into business strategy," Deloitte Insights, accessed March 2024

3) Cleveland, Sullivan, Poole, and Chahed, "Overcoming the hurdles to integrating sustainability into business strategy."

## II. CCG 아젠다 ①

###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이사회 의장의 미래 과제

델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에서는 기후 진전을 가속화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요소와 이사회 의장이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 최대 기업의 이사회 의장 230명을 인터뷰했다. 여기에는 다수의 대규모 가족기업(large family business)을 포함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포함되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인터뷰, 라운드테이블, 설문조사를 통해 인사이트와 의견을 수집했다.<sup>4)</sup>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과제들이 있지만 이사회 의장은 (몇 개만 예로 들면) 사고와 투자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성에 집중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을 관리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파악하고, 이사회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지식 기반의 기술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사회가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가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접근하며 통찰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들이 논의하는 6가지 주요 질문을 살펴봤다.

#### <표 1>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이사회 의장의 준비정도를 평가하는 6가지 질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아젠다를 비즈니스 전략에 가장 효과적으로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li> <li>기후변화에 필요한 투자와 단기적 성과에 대한 압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li> <li>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와 기대치를 관리하면서 규제의 변화에 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li> <li>이사회 의장의 광범위한 기후 아젠다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가장 효과적인 활동은 무엇인가?</li> <li>기후 문해력(climate literacy)<sup>5)</sup>을 높이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li> <li>이사회 의장으로서 어떻게 의미 있는 변화를 지지할 수 있는가?</li> </ul>

4)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국가 및 지역은 다음과 같음: 남아프리카, 동부 및 서부 아프리카,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네덜란드, 대만, 영국 및 미국

5) 인간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 II. CCG 아젠다 ①

###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이사회 의장의 미래 과제

#### 이사회 의장들은 기후 위기가 많은 비즈니스 및 투자 과제 중 3대 우선과제라고 말한다

딜로이트가 인터뷰한 이사회 의장들은 기후 위기의 시급성을 이해하고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한 이사회 의장은 “기후 위기는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당면 과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사회는 근본적인 전략 및 자원 배분과 관련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한 딜로이트가 최고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속가능성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는 기후변화를 조직의 3대 이슈로 꼽았으며, 61%는 기후변화가 향후 3년 동안 회사의 전략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6) 독일의 한 이사회 의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들은 기업들이 기후 행동의 진전을 늦추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기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 목표에 대한 지속성이 충분하지 않다. 기후변화보다 다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덴마크의 한 이사회 의장은 설명했다.

다른 이사회 의장들은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투자 환경이 필요한 기후 이니셔티브를 지목한다. “재생에너지로 전력망을 제로(0)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으나 에너지 전환에는 비용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다.”라고 미국의 한 이사회 의장은 지적했다.

이사회가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직면한 또 다른 과제는 기후 문제와 관련된 매우 긴 소요시간이다. 탈탄소화나 에너지 전환과 같은 목표는 실현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많은 경우, 이러한 목표는 경영진이나 이사회 임기가 끝난 후에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6) 딜로이트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부재로 2070년까지 세계 경제에 178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딜로이트 글로벌의 연구 결과", 2022.05.23

## II. CCG 아젠다 ①

###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이사회 의장의 미래 과제

이사회 의장들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아직 리더직에 있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영국의 한 이사회 의장은 “2030년에는 대부분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채 그린워싱에 가담하여 2030년에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척 쉬운 일이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일부 이사회 의장은 기후 행동을 전반적인 전략 결정에 통합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장기간의 소요시간으로 보고 있다. 호주의 한 이사회 의장은 “회사 전략에 포함되지 않으면 구성원이 바뀌기 때문에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사회가 변경되면 경영진도 변경된다. 하지만 전략에 포함되어 있고 상향식 계획(bottom-up plan)이 있다면 지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투자, 측정, 책임이 필요하다

많은 이사회 의장들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기후 활동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한 이사회 의장은 다수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는 운영 및 재무에 대한 일반적인 성과관리와 동일한 프레임워크에 기후 전환의 진척도를 반영해야 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후속 조치를 측정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품질 보고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이사회는 보고된 정보에 대해 적절한 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들은 기후 행동이 항상 비즈니스 경제성으로 쉽게 환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투자자와의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의 경제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인도의 한 이사회 의장은 언급했다.

미국의 한 이사회 의장도 이 문제를 인정하며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기업의 이사회는 기후 지식, 에너지 지식, 경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II. CCG 아젠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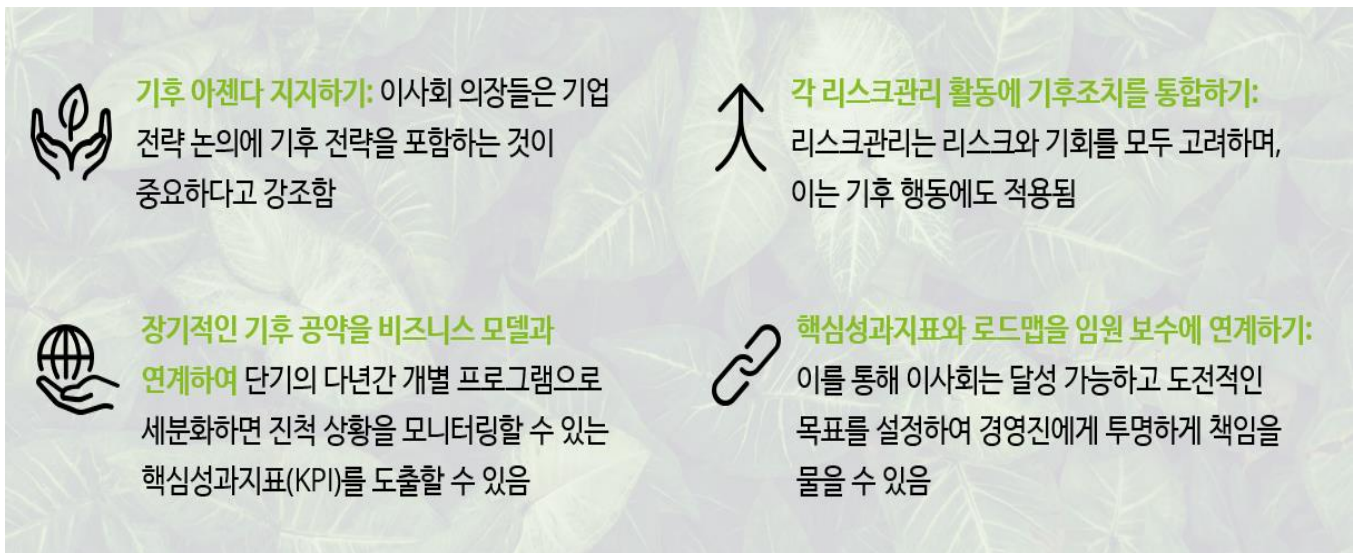
###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이사회 의장의 미래 과제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은 모든 시간대에 걸쳐 이해되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딜로이트의 글로벌 터닝 포인트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2070년까지 세계 경제에 178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가속화하면 향후 50년간 세계 경제는 43조 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sup>7)</sup>

기후 전략을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후 행동이 부수적인 논의가 아니라 최우선 과제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평일에는 기업 전략에 집중하고 토요일 아침에만 기후 전략에 집중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는 통합되어야 한다.”라고 프랑스의 한 이사회 의장은 덧붙였다.

다음은 기후 전략과 비즈니스 전략의 통합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 이사회 의장들이 공유한 내용이다. 해당 아이디어는 기후 아젠다 지지하기, 각 리스크관리 활동에 기후 조치를 통합하기, 장기적인 기후 공약을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하여, 핵심성과지표와 로드맵을 임원보수에 연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기후 전략과 비즈니스 전략의 통합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7) World Economic Forum and Deloitte, The chairperson's guide to climate stakeholders: Understanding how key groups are responding today and how they might respond tomorrow, April 2023

## II. CCG 아젠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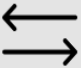



###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이사회 의장의 미래 과제

#### 이사회 의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 속에서 스투어드십<sup>8)</sup>을 발휘해야 한다

규제기관, 투자자, 직원, 고객 등 점점 더 많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기후 관련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sup>9)</sup> 일부 주주들은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sup>10)</sup>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행동 요구를 무시하면 기업은 경제적, 평판 및 소송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sup>11)</sup>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 우리가 채용하려는 사람, 우리가 공급하는 사람, 우리가 기업의 소유주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 등 모든 이해관계자는 기후변화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모두의 아젠다이다.”라고 영국의 한 이사회 의장은 강조했다.

이사회 의장들은 이해관계자 그룹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모범사례로는 적절한 포럼, 도구, 필수 공시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함으로써 생산적인 양방향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지지를 활용하여 기후 아젠다를 추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구체적인 도전과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집중,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장기적인 성공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관계 구축 등이 있다.

#### <그림 2> 이해관계자 그룹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모범사례

	적절한 포럼, 도구, 필수 공시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함으로써 <b>생산적인 양방향 대화</b>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b>직원들의 지지를 활용하여 기후 아젠다를 추진함.</b> 직원들과 목표와 성과를 공유하면 브랜드 구축과 인재 유치 및 유지에 유익할 수 있음
	<b>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구체적인 도전과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집중함</b>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비전과 기후 문제에 대한 참여에 대해 질문한다고 언급함
	<b>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장기적인 성공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관계를 구축함</b>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려면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때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8) 스투어드십(stewardship-청지기 정신)이란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 있는 계획과 자원 관리를 구현하는 사명의식을 뜻함

9) World Economic Forum and Deloitte, The chairperson's guide to climate stakeholders: Understanding how key groups are responding today and how they might respond tomorrow, April 2023

10) Carey Owen, Caroline Schoenecker, and Bob Lamm, "The 2023 board agenda: On the board's agenda, January 2023," Deloitte, accessed March 2024

11)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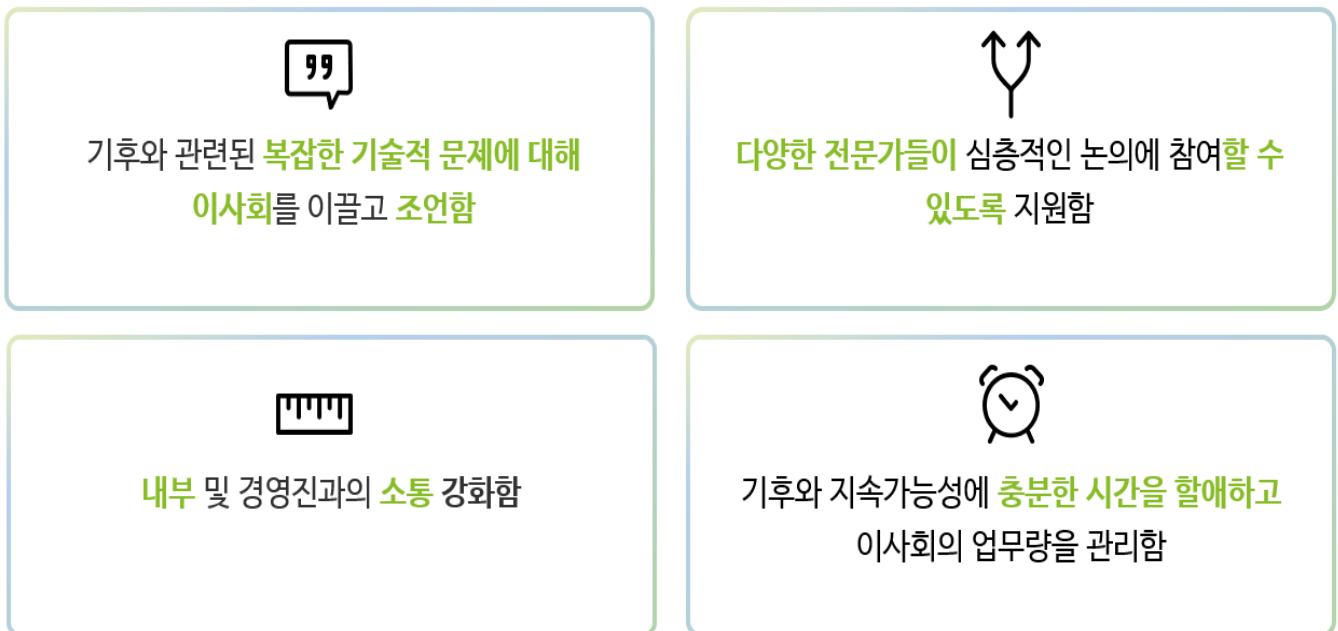
## II. CCG 아젠다 ①

###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이사회 의장의 미래 과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사회는 기후 아젠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별도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효과를 본 이사회 의장들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이사회를 이끌고 조언, 다양한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내부 및 경영진과의 소통 강화, 기후와 지속가능성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이사회 업무량 관리 등 이러한 신규 위원회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림 3> 기후 아젠다 탐구 및 지원에 도움이 된 위원회 활동



이사회 의장들은 이사회 기후 통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가치사슬, 그리고 비즈니스에 미치는 무수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다. 지식의 불균형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사회 토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사회 의장들은 특히 기후변화의 광범위한 영향과 더불어 기후와 비즈니스의 상호 작용에 대해 이사회가 올바른 지식 기반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이사회가 기후변화에 대한 비즈니스의 영향과 기후변화에 대한 비즈니스의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사회는 기술적 개념을 이해하여 기후 행동 이행의 진척 상황을 적절히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 II. CCG 아젠다 ①

###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이사회 의장의 미래 과제

이사회 의장들은 네 가지 주요 방법으로 이러한 학습 곡선을 해결하고 있다. 주요 방법으로는 지속적인 교육 및 기술 향상 기회 제공, 이사회 및 위원회 논의를 이끌 전문가 초대, 이사회에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영입, 이사회 의 다양성 확대가 있다.

<그림 4> 이사회 의장들의 학습 곡선 해결 방법

	이사회 회의에 내부 및 외부전문가를 초청하고 특별 학습 세션을 개최하며 자체 학습 기회를 장려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		이사회에 지속가능경영전문가를 영입하여 논의를 촉진하고 기후 아젠다를 진전시킬 수 있음 (참고: 일부 이사회 의장은 전문가가 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음)
	기후 및 지속가능성 감독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 (chief sustainability officer)와 같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 논의를 주도하도록 함		이사회 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기후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집단적 지식과 관점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변화를 지지하기: 미래의 이사회 의장을 위한 조언

이번 대화에 참여한 이사회 의장들의 인사이트를 정리한 다음의 조언은 미래의 의장이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그림 5> 미래의 의장을 위한 로드맵

동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b>협력자를 찾아</b>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당신의 생태계와 함께 발전하고 행동과 목표에 대해 <b>소통함</b>	목적, 전략, 임원 선임의 방향을 일치시킴	핵심 마인드를 수용함	기후 아젠다를 지지하여 회사가 자신감을 갖고 지속가능성의 여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지속적인 학습문화를 조성함



## II. CCG 아젠다 ①

###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이사회 의장의 미래 과제

#### • 협력자 찾기

어떤 조직도 혼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는 없다. 이사회 의장은 이해관계자들과 교류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참여의 예시로는 회원 단체 및 업계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모색하는 것이 있다.

영국의 한 의장은 “저는 이사회가 지금보다 더 정치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하며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부가 규제를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며 일부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 • 생태계와 함께 발전하고 행동과 목표에 대해 소통하기

기후 과제를 둘러싼 생태계는 매우 광범위하다. 여기에는 조직의 산업 부문, 다른 산업, 공급망, 정부 및 규제 기관, 임직원, 사회 혁신가 등이 포함된다. 주주와 이해관계자는 보다 광범위하게 진척 상황과 향후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계획에 관심이 있다. 이사회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주변 환경과 함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다.

프랑스의 한 이사회 의장은 “2019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을 때, 이는 큰 충격을 주었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 • 목적, 전략, 임원 선임을 조정하기

로드맵의 방향이 설정되면 의장과 이사회는 전략의 조정과 실행을 감독한다.

네덜란드의 한 이사회 의장은 “지속 가능성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며, 제 역할은 이사회를 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고 언급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는 CEO를 선임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 • 혁신 마인드를 수용하기

이사회 의장은 기후 행동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만의 한 이사회 의장은 “탄소중립 제품을 생산하여 제품 차별화를 이루고 저탄소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그린 프리미엄을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II. CCG 아젠다 ①

###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이사회 의장의 미래 과제

#### • 기후 아젠다를 지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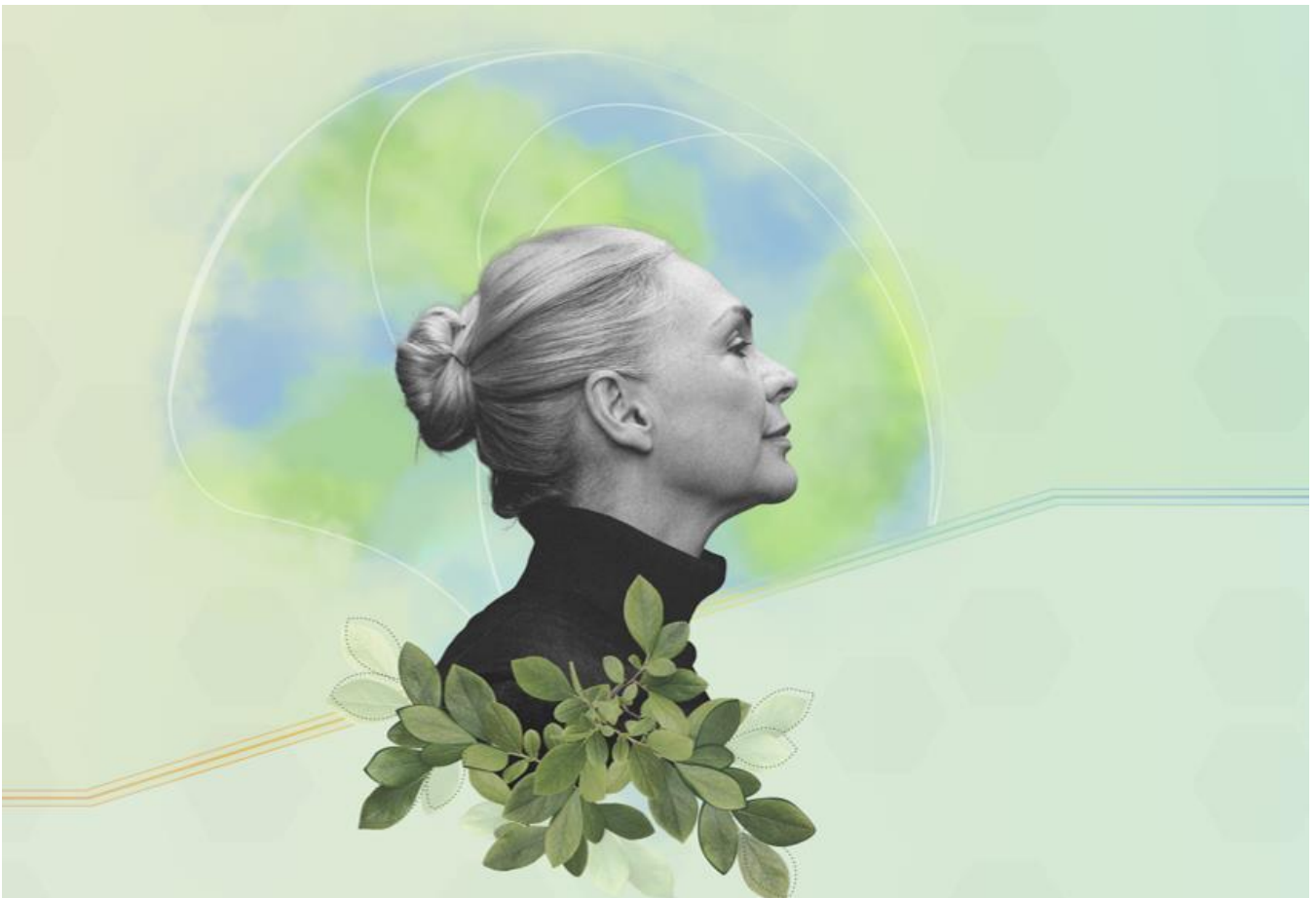
기업이 어떤 기후 대응책을 선택하든,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여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이사회 의장을 주시한다. 의장은 비즈니스와 이해관계자에게 이 주제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회사가 자신감을 갖고 지속가능성의 여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한 의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엄청난 과제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이러한 조치가 올바른 조치라는 확신을 조직 내에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지속적인 학습문화를 조성하기

기후변화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당면과제다. 이사회 의장과 이사회는 최신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영국의 한 이사회 의장은 “기후변화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이며 여러 측면에서 비즈니스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현명한 이사라면 누구나 논의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II. CCG 아젠다 ②

### FY2023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요약

- FY2023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의견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중요한 비적정 사유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 2,514사의 FY2023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 상장회사의 2,448사(97.4%)가 적정의견이었으며, 전기대비(97.8%) 0.4%p 하락함
- FY2023 상장회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87사(3.5%)로 전기대비 3사가 증가함
- 외부감사인이 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87사 중 경영진이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8사, 감사위원회가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8사에 불과하였음
  - 이러한 의견불일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경영진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감사(위원회)도 실효성 있는 평가활동 수행이 요구됨
- 최근 금융당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지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배경

- FY2023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결과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중요한 비적정 사유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FY2022에는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FY2023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전격 시행함
  - FY2023부터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는 면제되지만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실시되어야 함

## II. CCG 아젠다 ②

### FY2023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그림 1>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일정 1),2)

자산 규모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조원 이상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5천억원 ~2조원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5천억원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미만	검토												

- 금융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함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행 일정('23년)대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함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기업부담을 감안하면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도입 시기를 5년간 유예함 (FY2024 → FY2029)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모든 상장회사는 FY2030부터 감사가 의무화 됨
  - 더불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계도위주'로 감리 예정임

1) 금융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7.12

2) 금융위원회,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됩니다.」, 2022.12.05

## II. CCG 아젠다 ②

### FY2023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그림 2> 연결 재무제표 기준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일정 <sup>3)4)</sup>

자산 규모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조원 이상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위주	본격 감리									
5천억원 ~2조원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5천억원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미만	검토											

- 금융당국에서는 방대한 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규정 중 필수 사항을 선별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평가 보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음
-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 보고자인 대표자/내부회계관리자와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는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및 내부통제 관점의 비적정 사유 등 현황 이해를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받는 점에도 의의가 있음

3) 금융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07.12

4) 금융위원회,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202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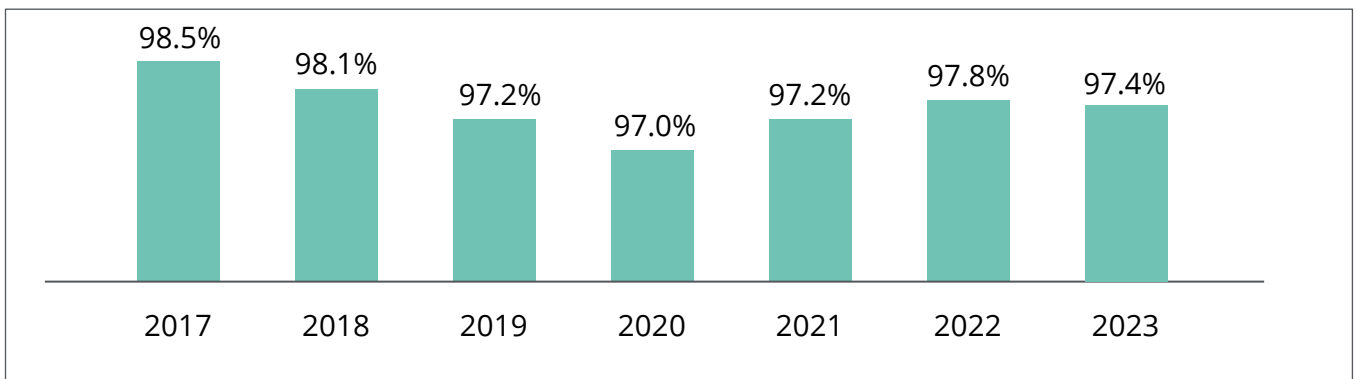
## II. CCG 아젠다 ②

### FY2023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상장회사(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재무제표 감사 의견

- 상장회사 2,514<sup>5)</sup>사의 FY2023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 상장회사의 2,448사(97.4%)가 적정의견이었으며, 전기대비(97.8%) 0.4%p 하락함
  - 최근 7년간 큰 폭의 변동없이 완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3> 최근 7년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의견 비율 추이<sup>6)</sup>



#### 상장회사(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재무제표 감사 의견

- FY2023 기준 상장회사 66사(2.6%)가 비적정 의견을 수령하여 전기대비(54사) 0.4%p 증가하였으며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주요 요인임
  - 한정 의견은 7사(0.3%)로 전기대비(8사) 비율 비교로는 변동 없음
  - 의견거절은 59사(2.3%)로 전기대비(46사) 0.4%p 증가함

<표 1> FY2023 상장회사 재무제표 감사의견<sup>7)</sup>

구분	시장유형(단위:사)				비율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적정	784	1,542	122	2,448	97.4%
비적정	14	47	5	66	2.6%
한정	3	4	-	7	0.3%
의견거절	11	43	5	59	2.3%
소계	798	1,589	127	2,514	

5) 2023년 12월 말 기준 유가증권,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법인이며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DR(주식예탁증권)를 포함함

6) 금융감독원, 「2021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FY2017-FY2021 추이, 2022.08.17

7)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II. CCG 아젠다 ②

### FY2023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표 2> FY2022 상장회사 재무제표 감사의견 8)

구분	시장유형(단위:사)				비율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적정	775	1,479	119	2,373	97.8%
비적정	10	34	10	54	2.2%
한정	2	4	2	8	0.3%
의견거절	8	30	8	46	1.9%
소계	785	1,513	129	2,427	100.0

□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기업규모가 작을 수록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95.5%로 가장 낮은 수준임

- 소규모 기업은 상대적으로 약한 재무구조 또는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

<표 3> FY2023 상장회사 자산규모별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율 9)

구분	1천억원 미만		1천억~5천억원		5천억~2조원		2조원 이상		소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적정	864	95.5%	1,044	97.9%	341	99.4%	199	99.5%	2,448	97.4%
유가증권	56	6.2%	297	27.9%	239	69.7%	192	96.0%	784	31.2%
코스닥	691	76.4%	742	69.6%	102	29.7%	7	3.5%	1,542	61.3%
코넥스	117	12.9%	5	0.5%	-	-	-	-	122	4.9%
한정	5	0.5%	1	0.1%	1	0.3%	-	-	7	0.3%
유가증권	1	0.1%	1	0.1%	1	0.3%	-	-	3	0.1%
코스닥	4	0.4%	-	-	-	-	-	-	4	0.2%
코넥스	-	-	-	-	-	-	-	-	-	-
의견거절	36	4.0%	21	2.0%	1	0.3%	1	0.5%	59	2.3%
유가증권	4	0.4%	6	0.6%	-	0.0%	1	0.5%	11	0.4%
코스닥	27	3.0%	15	1.4%	1	0.3%	-	-	43	1.7%
코넥스	5	0.6%	-	-	-	0.0%	-	-	5	0.2%
소계	905	100.0%	1,066	100.0%	343	100.0%	200	100.0%	2,514	100.0%

8)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9)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 II. CCG 아젠다 ②

### FY2023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상장회사(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 FY2023 상장회사 중 비적정 감사 및 검토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87사(3.5%)로 전기대비 3사가 증가함
  - FY2023 감사대상인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1,609사 중 35사 (2.2%)에서 비적정 감사 의견이 도출되어 전기대비 0.3%p 상승함
    - FY2022 감사대상인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1,579사 중 30사 (1.9%)에서 비적정 감사 의견
  - FY2023 검토대상인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905사 중 52사 (5.7%)에서 비적정 검토 의견이 도출되어 전기대비 0.7%p 상승함
    - FY2022 검토대상인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5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848사 중 54사 (6.4%)에서 비적정 검토 의견
- FY2023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2조 이상인 상장회사는 1사를 제외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인 점은 주목할 사항임

<표 4> FY2023 자산규모 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비적정 의견 결과: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sup>10)</sup>

시장구분	검토 대상		감사 대상				소계			
	1천억원 미만	1천억~5천억원	5천억~2조원	2조원 이상						
유가증권	6	11.5%	11	34.4%	1	50.0%	1	100%	19	21.8%
코스닥	36	69.2%	21	65.6%	1	50.0%	-	-	58	66.7%
코넥스	10	19.2%	-	-	-	-	-	-	10	11.5%
소계	52	100%	32	100%	2	100%	1	100%	87	100%

<표 5> FY2022 자산규모 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비적정 의견 결과: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sup>11)</sup>

시장구분	검토 대상		감사 대상				소계			
	1천억원 미만	1천억~5천억원	5천억~2조원	2조원 이상						
유가증권	5	9.3%	12	46.2%	3	75.0%	-	-	20	23.8%
코스닥	39	72.2%	14	53.8%	1	25.0%	-	-	54	64.3%
코넥스	10	18.5%	-	-	-	-	-	-	10	11.9%
소계	54	100%	26	100%	4	100%	-	0%	84	100%

10) 2023년 12월 말 기준 유가증권,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법인이며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인 DR(주식예탁증권)을 포함

11) FY2022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과 DR(주식예탁증권)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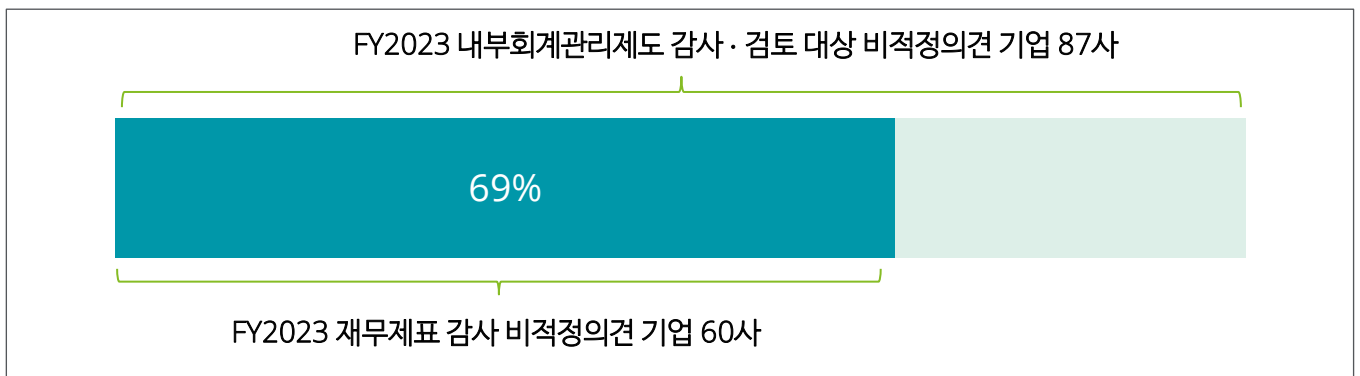


## II. CCG 아젠다 ②

### FY2023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올해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원년으로, FY2023 감사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중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기업은 1사임<sup>12)</sup>
  -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활용해 적당한 준비기간을 두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효과적으로 준비한 결과로 고려됨
- 다만, 금융당국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FY2023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유예 신청 기업에 한해 하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 상황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중요한 자회사를 취득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경우
  - 자산총액 2조원을 약간 상회해 다음 해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연결 준비가 부족해 유예 기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만 유예 기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심사를 통해 제도 유예를 허가받은 기업은 당해 사업보고서에 유예 사실과 사유를 공시해야 함
- FY2023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비적정 의견 기업 87사 중 재무제표 감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60사(69%)로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음

<그림 4> 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대상 비적정의견 기업 중 재무제표 감사 비적정 의견 기업 수<sup>13)</sup>



12,13) 2023년 12월 말 기준 유가증권,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법인이며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과 DR(주식예탁증권)을 대상으로 함

## II. CCG 아젠다 ②

### FY2023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내부통제 관점의 상장회사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 FY2023 기준 회사 지배기구 등이 주목해야 할 내부통제 관점(재무제표 작성 절차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 포함)에서 비적정 감사의견과 검토의견을 받은 87사에서 총 280건의 비적정 사유가 파악되었음
-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25.4%)가 비적정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폐쇄적인 투자 의사결정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수행하여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회계처리 과정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의미함
  - '범위 제한(19.3%) 및 '당기 감사 중 재무제표 수정'(7.1%)도 국내의 전형적인 비적정사유로 언급되고 있음

<표 6> 내부통제 관점의 FY2022~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sup>14)</sup>

비적정사유	회계연도			
	FY2023		FY2022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	71	25.4%	72	25.8%
범위 제한	54	19.3%	44	15.8%
회계 전문성 확보 미비	49	17.5%	47	16.8%
당기 감사 중 재무제표 수정	20	7.1%	21	7.5%
자금 통제 미비	18	6.4%	29	10.4%
내부감사기능 미비	18	6.4%	20	7.2%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10	3.6%	11	3.9%
부적절한 공시 통제	8	2.9%	2	0.7%
지배기구의 비효과성	6	2.1%	6	2.2%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3	1.1%	5	1.8%
업무 분장(Segregation of duty) 미비	3	1.1%	6	2.2%
법규 미준수	3	1.1%	3	1.1%
임직원 윤리의식 또는 준법사항 준수 미비	2	0.7%	3	1.1%
정보기술통제(ITGC) 미비	2	0.7%	3	1.1%
기타 사유	13	4.6%	7	2.5%
<b>소계</b>	<b>280</b>	<b>100%</b>	<b>279</b>	<b>100%</b>

1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FY2023 및 FY2022 분석대상 총 회사 수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으로 각각 2,514사, 2,428사임. 비적정 사유 중 '회계 전문성 확보 미비'에는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의 사유를 포함하여 분류함

## II. CCG 아젠다 ②

### FY2023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환기되고 있는 항목인 '자금 통제 미비'(6.4%)도 비적정 주요 사유의 하나임
    - 자금통제활동 설계여부 확인 또는 기 설계된 자금통제 활동이 정확하고 충실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임
  - '회계 전문성 확보 미비'(17.5%)나 '정보기술통제 미비'(0.7%) 및 '업무분장 미비'(1.1%)와 같은 통제환경 또는 회계역량 등도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 관점의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재무보고내부통제) 주요 비적정 사유로 '회계인력 전문성 및 인력 부족'(67.6%) 비중은 국내와 유사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하지만 '정보기술통제(ITGC) 미비'(22.4%), '업무분장 미흡'(57.8%) 및 '적시에 정확한 공시 미이행'(35.8%)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국내 현황과 차이가 있음
  - 이에 대한 이해의 접근방식은 본질적 통제요소(통제환경, 회계역량 등)의 취약점까지 치유되어야 한다는 Top-Down 평가방식이 적용된 것임

<표 7> 최근 미국 ICFR 주요 비적정 사유 Top 5 <sup>15)</sup>

비적정사유	비중 (복수응답 포함)
회계인력 전문성 및 인력 부족	67.6%
업무분장 미흡	57.8%
적시에 정확한 공시 미이행	35.8%
정보기술통제 (ITGC) 미비	22.4%
불규칙한 거래패턴	16.7%

15)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 a nineteen-year review」, 2023.08

## II. CCG 아젠다 ②

### FY2023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 의견과 대표자 및 감사(위원회) 의견간 불일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의견, 대표자는 운영현황 및 실태보고와 감사(위원회)는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시하는 것으로 요약됨
- 외부감사인이 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87사 중 경영진이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8사(9.2%)로 전기대비 8.6%p 하락하였으며, 감사위원회가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8사(9.2%)로 전기대비 14.6%p 하락하는 등 의견불일치가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경영진 평가에 대한 자본시장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기업 내 감사(위원회) 감독을 위한 지원조직 운영 미흡 등으로 인해 감사(위원회)의 감독 활동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추후 경영진은 자사 실태를 제대로 반영한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감사(위원회)도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활동의 진행이 요구되는 시점임

<표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 포함할 공시 내용

보고자	보고서 상 포함 내용	공시사항	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비적정 의견 회사 수 <sup>16)</sup>	FY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비적정 의견 회사 수 <sup>17)</sup>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회계 설계와 운영</li> <li>• 상시적/정기적 점검체계</li> <li>• 효과성 점검의 객관적 지표</li> <li>• 최종의견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실태 보고서</li> <li>• 규정과 조직 및 인력사항</li> </ul>	8 (9.2%)	15 (17.8%)
감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 여부 확인</li> <li>•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실질적 운영 평가</li> <li>• 운영실태보고의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실태 평가보고서</li> </ul>	8 (9.2%)	20 (23.8%)
외부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및 감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 또는 검토의견</li> </ul>	87 (100%)	84 (100%)

16, 17)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II. CCG 아젠다 ②

### FY2023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개정할 권한이 금융감독원에 부여됨에 따라 경영진 등의 책임의식 제고, 제도 운영 내실화, 외부감사 및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근거가 마련된 사항을 참고해야 함
  - 자율규정으로 제정·운영되던 기준을 보완하여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
  -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 보고할 때 따라야 할 핵심 절차를 업무 흐름에 따라 제시 및 세부 절차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히 설명
    - ① 재무보고 위험과 통제 식별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 ③ 통제의 미비점의 효과 → ④ 평가 결과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세부절차와 운영 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포함할 사항을 규정

<표 9>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서 신설·추가 사항<sup>18)</sup>

운영실태보고서 [대표이사 → 주총 이사회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감사(위원회) →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한 취약점 시정조치 계획'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포함</li> <li>•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내역, 횡령 등 자금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핵심 내부통제 활동 등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신인을 이사회로 한정</li> <li>•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내역, 자금관련 부정 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소통내역 등 추가</li> </ul>

- 금융감독원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바,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공하여 실무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 자율규제 규정화 통해, 단계별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의식이 제고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를 일관되게 산정할 수 있어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도 완화될 것임

18)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 강화 및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 명확화」, 2023.12.29

## II. CCG 아젠다 ②

### FY2023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표 10>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절차<sup>19)</sup>

선정절차		양적 기준	질적 기준 (예)
1단계	유의적 부문 선정	매출 등 주요지표의 15% 초과	부정이 위험이 높은 부문 등
2단계	개별적으로 중요 왜곡표시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중요성 금액의 4배	그룹 통제의 운영 효과성이 낮은 부문 등
3단계	타 부문 합산시 중요 왜곡표시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중요성 금액의 8배	부문의 중요 왜곡표시위험 수준 등

### 결언

- 재무제표 감사 적정의견 비율은 최근 4개년간 큰 변동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중임
  - 적정의견 비율: FY2020 97.0% - FY2021 97.2% - FY2022 97.8% - FY2023 97.4%
- FY2023 상장회사에서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 및 검토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87사로 유가증권시장 19사, 코스닥시장 58사와 코넥스시장 10사이며 전기대비 3사 증가함
- 올해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원년으로, FY2023 감사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중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기업은 1사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에 대비한 다년간의 선제적 노력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 이슈의 감소로 해석될 수 있음
- 내부통제 관점에서 국내 기업의 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비적정 의견의 주요 사유는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71건, 25.4%) - '범위 제한'(54건, 19.3%) - '회계 전문성 확보 미비'(49건, 17.5%) - '당기 감사 중 재무제표 수정'(20건, 7.1%) - '자금 통제 미비'(18건, 6.4%)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미국의 경우 ICFR 비적정 의견의 주요 사유로 '정보기술통제'(22.4%), '업무분장 미흡'(57.8%) 및 '적시에 정확한 공시 미이행'(35.8%) 항목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국내 현실과 차이가 있음

19)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 강화 및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 명확화」, 2023.12.29

## II. CCG 아젠다 ②

### FY2023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 의견과 대표자 및 감사(위원회) 의견간 불일치의 정도가 큼
  - 외부감사인이 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87사 중 경영진이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8사(9.2%)로 전기대비 8.6%p 하락하였으며, 감사위원회가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8사(9.2%)로 전기대비 14.6%p 하락하는 등 의견불일치가 나타났음
  - 중단기 차원에서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경영진은 자사 실태를 제대로 반영한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감사(위원회)도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활동의 진행이 요구되는 시점임
- 최근 금융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지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sup>20)</sup>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개정할 권한이 금융감독원에 부여됨에 따라 경영진 등의 책임의식 제고, 제도 운영 내실화, 외부감사 및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근거가 마련된 사항을 참고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바,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공하여 실무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 더불어 최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인증 면제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인증 도입시기의 연기 등의 가이드라인 제공은 해당 사항이 중요하지 않아 연기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임이 환기될 필요가 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Backbone)임을 기업은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

20)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 강화 및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 명확화」, 2023.12.29

## II. CCG 아젠다 ②

### FY2023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별첨

<표 11>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 또는 검토 의견 원문 예시

FY2023 비적정 사유 비중	내용
<b>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 (25.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운영계획에 따른 중간 및 기말평가 내역에 대해 경영진과 이사회 간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 않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담당자, 책임자 및 이사회와 적절하게 의사소통 되고 있지 않습니다.</li> <li>회사의 투자금융상품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적합한 통제활동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으며, 금융상품의 회수가능가액에 대한 검토 통제를 포함하여 추정치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되는 통제활동의 운영 결과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li> </ul>
<b>범위 제한 (19.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는 우리에게 별첨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제시하였으나, 우리는 회사의 내부회계제도가 전반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을 위하여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li> <li>우리는 회사의 내부회계제도가 전반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li> </ul>
<b>회계 전문성 확보 미비 (17.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는 사업부진에 따른 인원 감소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통제절차 운영이 미흡하여 검토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li> </ul>
<b>당기 감사 중 재무제표 수정 (7.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의 회계처리를 검토하는 내부통제의 미비로 인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와 감사인에게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의 유의적인 불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전에 적절한 내부통제에 의해 식별, 승인되어 적절한 내부통제를 거쳐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취약점의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li> <li>회사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이에 따른 중요한 오류사항에 대한 발견 등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와 관련한 적절한 통제활동이 미흡하여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감사인에 의한 수정권고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li> </ul>
<b>자금 통제 미비 (6.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는 자금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내부통제절차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금프로세스는 재무제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미비점은 재무제표 모든 계정에 대해 적절하게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합니다.</li> <li>회사는 인감의 사용 시 인감대장에 사용내역 및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관리를 통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거래사실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통제절차가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았던 미비점이 보완 및 개선이 되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의 재무제표가 유의적인 거래의 누락 없이 완전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내부통제의 효과성 확인을 위한 절차를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li> </ul>



## III. 데이터 포인트 ①

### 글로벌 vs. 국내 주요기업 여성 이사진 비중 및 시사점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 요약

- 전 세계 이사회 내 여성의 구성 비율을 살피고 그와 관련된 정치, 사회 및 법적 동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함
  - 본 조사는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 내 여성분포, 평균 연령 및 재임기간, 여성이사 할당제 시행 현황, 국가별 진행상황, 이사회 고려사항 및 질문으로 구성됨
- 전 세계 50개국 '23년 여성 이사회 의장 비율은 8.4%에 불과하며, 여성 CEO 비율은 6%에 불과함
  - 현 추이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 및 CEO 직책의 성평등은 각각 2073년, 2111년에야 달성 가능함
- 한국의 '23년 이사회 내 여성비율은 '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8.8%로 여전히 낮은 수치이며, 50개국 중 최하위 5개국에 속한 것으로 나타남

#### 논의 배경

- '우먼 인 더 보드룸' 제8판<sup>1)</sup>은 50개국 18,000개 이상의 기업 대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권역의 이사회 내 여성 구성 비율을 살피고 그 이면에 있는 정치, 사회 및 법적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함
  - '23년 3월, 아시아 태평양, 미주 및 유럽, 중동, 아프리카(EMEA)에 걸쳐 50개국 18,000개 이상의 기업(206,000개 이상의 이사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함
- '18년 이후 조사회차를 거듭할 수록 응답자가 예상하는 이사회 내 성평등(gender parity)<sup>2)</sup> 달성을 위한 소요기간이 점층적으로 단축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 이사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다만 많은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38년 이전에는 성 평등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1) Deloitte Global Boardroom Program, 「Women in the boardroom: A global perspective」, 제8판, 2024.03

2) 남녀평등을 지수로 나타내는 용어로 남녀동수를 뜻함

# III. 데이터 포인트 1

## 글로벌 vs. 국내 주요기업 여성 이사진 비중 및 시사점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여성 비율

- '2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이사회는 여성이 이사회 내 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장 의석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이사회는 여성이 위원회 의석의 20% 미만, 위원회 위원장 의석은 거버넌스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10%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이 이사회 이사직을 맡고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사회 의장직에 진출하는 데는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할 것임

<표 1> 글로벌 vs. 국내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여성 비율

구분		글로벌			한국		
		● 2023	● 2021	● 2018	● 2023	● 2021	● 2018
위원	감사위원회	28.9%	24.8%	21.1%	12.8%	3.8%	2.4%
	거버넌스위원회	31.4%	26.4%	20.7%	19%	3.8%	2.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7.4%	23.2%	19.9%	13.7%	3.6%	1.2%
	보상위원회	26.9%	23%	19.8%	12.9%	5.5%	1.7%
	리스크위원회	30%	26.2%	23.8%	12.2%	5.9%	4%
위원장	감사위원회	25.7%	21.2%	16.6%	6.1%	3%	2.1%
	거버넌스위원회	30.1%	23.7%	18.5%	26%	2.2%	3.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3.4%	19%	15.8%	8.8%	4.4%	0%
	보상위원회	25.2%	20.7%	18.1%	7.6%	3.8%	3%
	리스크위원회	28%	23.7%	20.1%	7.7%	5.6%	7.1%

###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높은 산업 순위

- '23년 서베이 결과 글로벌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높은 산업 순위는 생명과학&헬스케어(26.1%) - 금융서비스(24.8%) - 에너지&자원(23.4%)순으로 나타남. 반면, 국내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높은 산업 순위는 에너지&자원(15.3%) - 금융서비스(10.8%) - 소비재 산업(10.0%)순임

# III. 데이터 포인트 1

## 글로벌 vs. 국내 주요기업 여성 이사진 비중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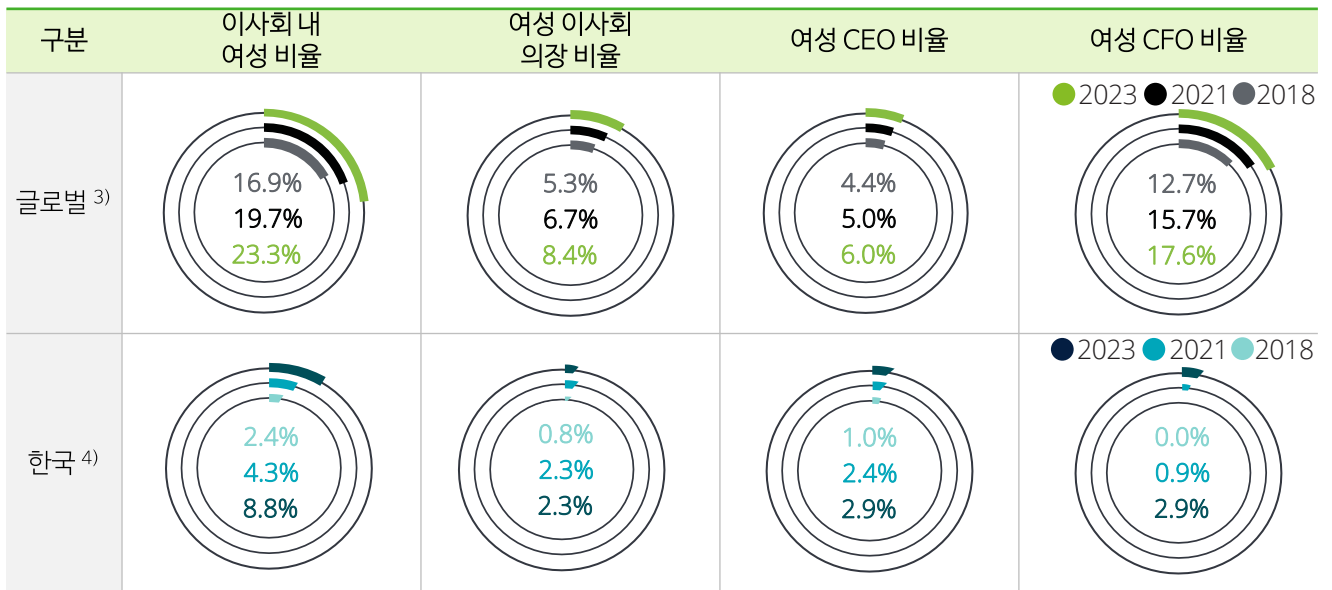
<표 2> 글로벌 vs. 국내 이사회내 여성 비율이 높은 산업 순위

구분	글로벌			한국			
	2023	2021	2018	2023	2021	2018	
생명과학&헬스케어	26.1%	21.3%	17.9%	에너지&자원	15.3%	8.4%	4.8%
금융 서비스	24.8%	21.2%	17.6%	금융 서비스	10.8%	4.9%	1.3%
에너지&자원	23.4%	19.7%	16.5%	소비재 산업	10%	4.8%	2%
기술,미디어&텔레커뮤니케이션	22.5%	18.8%	16.9%	제조업	8.8%	1.9%	1.1%
				생명과학&헬스케어	7.3%	5.7%	2.9%

###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 내 여성 분포

- 국내의 경우 '23년의 이사회 내 여성비율은 8.8%로 '21년 조사 시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비중이나 글로벌 평균 수준인 23.3%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50개국 중 최하위 5개국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하위 5개국은 카타르(1.5%), 사우디아라비아(2.8%), 쿠웨이트(6.2%), 아르헨티나(7.5%) 및 한국(8.8%) 순임

<표 3> 글로벌 vs. 국내 이사회내 여성 비율



3) 글로벌 50개국의 총 18,085개사를 분석하였으며, 이사회내 여성이사 수는 18,532명임 (이사회내의 약9%)

4) 총 461개사를 분석하였으며, 이사회내 여성이사 수는 253명임

### III. 데이터 포인트 ①

#### 글로벌 vs. 국내 주요기업 여성 이사진 비중 및 시사점

##### 평균 연령 및 재임 기간

- '23년 기준 국내 여성 이사회 멤버의 평균 연령은 53.4세로 글로벌 대비 4.1년 젊으며, 평균 재임 기간은 3.3년으로 글로벌 평균 임기 대비 1.9년 짧습니다.
- 국내 여성 이사회 의장의 평균 연령은 57.6세로 글로벌 대비 0.6년 젊으며, 평균 재임 기간은 8.1년으로 글로벌 의장의 평균 임기 대비 3.2년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4> 글로벌 vs. 국내 여성 이사회 평균 연령 및 재임 기간

구분	글로벌	한국
	● 2023 ● 2021 ● 2018	● 2023 ● 2021 ● 2018
이사회 멤버	2023: 57.5세, 5.2년 2021: 57.2세, 5.1년 2018: 57세, 5.5년	2023: 53.4세, 3.3년 2021: 54.3세, 4.5년 2018: 54.2세, 2.6년
이사회 의장	2023: 58.2세, 4.9년 2021: 57.7세, 5.0년 2018: 59.4세, 5.4년	2023: 57.6세, 8.1년 2021: 55.2세, 8.2년 2018: 47세, 14.9년

##### 여성이사 할당제

- 글로벌 차원에서 여성 할당제를 적용하는 정부의 조치는 이사회 내 성평등을 진전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사회 내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6개 국가 중 5개국은 약 33%에서 40%에 이르는 여성이사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못함이 법제화 되었음<sup>5)</sup>
  - 정부의 조치만으로는 성평등 달성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은 성 다양성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제언함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 III. 데이터 포인트 ①

#### 글로벌 vs. 국내 주요기업 여성 이사진 비중 및 시사점

<표5> 이사회내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국가

지역	비율	전체 또는 특정 상장법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할당제 또는 이에 준하는 할당제 존재	할당비율
프랑스	44.0	✓	40.0
노르웨이	43.5	✓	40.0
이탈리아	40.4	✓	40.0
벨기에	38	✓	33.0
뉴질랜드	36.3	✗	없음
네덜란드	35.8	✓	33.0
스웨덴	35.3	✗	없음

#### 여성 사외이사 비중 증가 및 위상 개선 변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 오늘날 이사회 아젠다는 다양하며, 이사회가 파악해야 할 과제와 새로운 분야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조직이 보다 형평성을 갖추고 균형 잡힌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을 구성하며 실질적으로 여성 사외이사 비중 증가 및 위상 개선 변화를 위해 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6> 체크리스트

내용
<p>이사 선임 시 과거 경력만으로 평가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날 복잡성을 고려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적절한 경험, 기술 및 배경을 갖추고 있는가?</li> <li>• 스킬셋, 역량, 리더십, 비즈니스 통찰력 보다 과거 임원 또는 이사회 직책 경험에 중점을 두어 의도치 않게 다양성을 갖춘 우수한 여성 후보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가?</li> </ul>
<p>거버넌스 구축 시 참신성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과 이사회는 여성에게 거버넌스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창의적인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는가?</li> <li>• 잠재력이 높은 후보자를 자회사나 다른 조직의 이사회에 배치하여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 파이프라인 뿐만 아니라 기업 파이프라인에 더 광범위하게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있는가?</li> </ul>
<p>파이프라인 정보와 진행상황 정기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와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li> <li>• 여성이 최고 경영진 층에 얼마나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가?</li> <li>• 파이프라인에서 남성과 동일한 비율로 여성이 승진하고 있는가?</li> <li>• 파이프라인의 중요시기에 여성 리더가 유실되고 있지는 않은가?</li> </ul>

## III. 데이터 포인트 ①

### 글로벌 vs. 국내 주요기업 여성 이사진 비중 및 시사점

#### 시사점 및 제언

- 2010년, 딜로이트 글로벌이 본 연구를 시작한 이유는 전 세계의 이사회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균형 잡히고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가 이사회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음
- 2010년에는 소수의 국가에서만 여성 이사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분석 대상 50개 지역 중 약 3분의 1이 일종의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균형 잡힌 이사회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 '우먼 인 더 보드룸: 글로벌 관점' 제 8판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은 여전히 전 세계 이사회 의석의 4분의 1 미만(23.3%)에 불과하며, 2022년 이후 3%p 증가에 그쳤음
  - 이러한 속도라면 2038년에야 비로소 이사회에서 성비가 동등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번 조사에 포함된 18,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여성 이사회 의장과 CEO의 비율은 각각 8.4%와 6%에 불과하다는 점이 눈에 띄는 사항임
  - 현재의 변화 추이라면 이사회 의장의 경우 2073년, CEO의 경우 2111년 후에야 비로소 성비가 동등해질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 결과는 임기 내 기업 리더십의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해 비즈니스 리더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행동을 취해야 함을 시사함
  - 이사회 의장, 이사회, 최고경영진 등은 이사회 다양성을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두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규제기관, 투자자, 지역단체 및 사회 전반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한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이 형평성 실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함

## IV. 주요 규제 동향 ①

### 금융당국의 기업 Value-up 프로그램 실행 진행경과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요약

- 금융당국은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지원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및 운용 계획”을 발표하였음<sup>1)</sup>
- 지난 2월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sup>2)</sup> 이후 정부 및 유관기관은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5월 2일 공개하였음<sup>3)</sup>
-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주주 및 시장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결정(well-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로 이어질 것임
- 선순환적 자본시장 구축을 통해 기업, 투자자, 시장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으며, 상장기업과 한국 증시 전체가 진정한 내재가치 또는 기대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임

#### 논의 배경

-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보호강화를 중심으로 제도적 노력을 계속 해왔음
- 정부의 노력을 더해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가 공시된 계획을 투자판단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함임
-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최근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닌 시작임
  -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정착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임

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 개최」, 2024.1.24

2) 금융위원회,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을 적극 지원합니다」, 2024.02.26

3) 금융위원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수립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습니다」, 2024.05.02

## IV. 주요 규제 동향 ①

### 금융당국의 기업 Value-up 프로그램 실행 진행경과

#### 추진경과

- 지난 2월 26일 1차 공동세미나를 통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정부 및 유관기관은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기업·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의견수렴을 지속해 왔음
- 4월 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는 기업 밸류업 표창(내년 5월부터 시행)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한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함
  - 모범납세자 선정(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시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에서 다각적·적극적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함
  -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방안은 이미 발표되었으며<sup>4)</sup>,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대로 발표하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를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표 1>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구분	인센티브	발표
세무 회계	• 5종 세정지원 <sup>5)</sup>	2.26일
	•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4.2일 신규발표
상장 공시	•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 거래소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 유예	
홍보 투자	• 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 제공	2.26일
	•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4) 미국 워싱턴 D.C.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취재단 기자 간담회, 2024.04.21

5) 1)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세정 Fast-Track<sup>(2)</sup>R&D공제 사전심사, 3)법인세 감면 컨설팅, 4)부가법인세 경정청구심사 관련), 5)가업승계 컨설팅



## IV. 주요 규제 동향 ①

### 금융당국의 기업 Value-up 프로그램 실행 진행경과

- 이 외에도, 정부 및 유관기관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릴레이 간담회, 해외투자자 대상 IR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5월 2일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차례로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표 2> 기업 밸류업 관련 주요 간담회·IR 추진경과

일시	내용	대상
2.27	해외기관투자자 대상 싱가포르 현지 IR (금융위·유관기관)	투자자
3.7	「기업 밸류업 자문단」 Kick-off 및 1차 회의 (거래소)	기업·투자자
3.14	기업 밸류업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 (금융위·유관기관) ▶ 스투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방향 발표	투자자
3.22	주요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 간담회 (거래소·유관기관)	기업
3.25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관련 해외기관투자자 IR (거래소·유관기관)	투자자
3.28	「기업 밸류업 자문단」 2차 회의 (거래소)	기업·투자자
4.2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 (금융위·유관기관) ▶ 3대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방안 발표	기업
4.4	대표기업(자산 10조원이상 코스피) 간담회 (거래소)	기업
4.11	「기업 밸류업 자문단」 3차 회의 (거래소)	기업·투자자
4.15	주요 외국계증권사 대상 IR (거래소)	투자자
4.17	중견기업(자산 2조원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간담회 (거래소) ▶ 기업의 “계획 미달성시 불성실공시 제재 우려” 관련 면책규정 적용방안 발표	기업
4.18	세계 10대 그룹 대상 설명회 (거래소·유관기관)	기업
4.23	「기업 밸류업 자문단」 4차 회의 (거래소)	기업·투자자
4.26	상장기업(코스닥 상장기업) 간담회 (거래소)	기업

## IV. 주요 규제 동향 ①

### 금융당국의 기업 Value-up 프로그램 실행 진행경과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 기업가치란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미래 현금흐름 등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총 가치이며, 기업의 경영 성과, 성장가능성, 시장환경,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함

<표 3> 기업가치 제고 계획

구분	내용
대상	•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
의무여부	• 기업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계획
방법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계획서 첨부
주기	• 연 1회 등 주기적으로 공시 권고
기대효과	•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투자자 효용 증대

- 가이드라인(안)은 원칙과 개괄적인 설명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사례 및 참고서식 등을 담은 “해설서”로 구성됨
- 상장기업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의 특징을 지님

<표 4> 기업가치 제고 계획 5대 핵심 특징

구분	내용
자율성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참여여부, 작성내용은 기업 자율성 보장
미래지향성	•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목표 및 계획 중심 적극적으로 설명 - 기존 공시는 이미 발생·결정한 내용 중심으로 작성
종합성	• 각종 공시에 산재된 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하는 종합 보고서
선택과 집중	• 세부 내용, 서술방식에 있어 기업특성을 고려해 강조할 부분 선정
이사회책임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사회적 적극적 참여 권고

## IV. 주요 규제 동향 ①

### 금융당국의 기업 Value-up 프로그램 실행 진행경과

-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의 이해편의 및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을 제시함

<표 5> 목차별 기재사항

구분		내용
기업개요		• 업종, 연혁, 제품서비스, 재무실적 등 기본 정보 제공
현황진단	사업현황	• 사업모델, 국내외 시장여건, 경쟁우위요소, 리스크요인 등
	지표선정	• 기업특성 감안한 재무지표 또는 비재무 지표
	지표분석	• 시계열분석, 산업 평균 또는 경쟁사와의 비교 등
목표설정		• 중장기 목표, 계량화된 수치 등으로 명료하게 제시 권장, 정성적 서술도 가능
계획수립		• 기업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계획 수립, 목표·계획간 연계성 설명 • 수익성(성장성) 제고 계획, 주주환원 계획, 지배구조 개선 계획 등 수립
이행평가		• 목표 달성 및 계획 이행 여부 평가 • 전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목표 재설정 및 계획 수정
소통		• 주주, 시장참여자와 소통현황, 계획, 실적 등 제시

#### 향후 추진계획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이에 맞추어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함께 개시될 예정임
-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차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지역소재 기업 대상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3Q), 연계 ETF 상장(~4Q) 등도 차질없이 이루어질 예정임

## IV. 주요 규제 동향 ①

### 금융당국의 기업 Value-up 프로그램 실행 진행경과

<표 6> 향후 추진계획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확대 (5월~)								
2024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5월 이후)	공시 시작							
통합페이지 신설 및 투자지표 제공 (5월 이후)	공개 시작							
찾아가는 지역 밸류업 설명회 (5월 이후)	집중 실시							
이사회안내(5월말 이후) · 공시교육·컨설팅·영문번역 지원(6월 이후)	안내 시작	교육 등 시작						
밸류업 지수 개발 (~9월)					지수 발표			
지수 연계 ETF 등 금융상품 출시 (~12월)								ETF 등 출시

#### 시사점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증시를 통해 조달한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주와의 관계에서 소통과 환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상장사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모든 사항을 공시할 필요는 없으며, 기업가치 제고계획공시를 위해서는 주주와 투자자들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 목표를 세워야 함
-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적절히 수립 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이사회의 개최일자나 논의내용 등을 기재하여 계획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 IV. 주요 규제 동향 ②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및 지배기구 고려사항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요약

- 본고에서는 한국 ESG기준원이 2024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 지배기구 고려사항을 제시함
-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 상정 안건을 사전 검토하여 부당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상유무를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주요안건에 대해 감사위원회에게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는 주주제안 등의 사안 발생시 논의내용이 회사와 이해관계자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행동주의의 동향을 탐색하고 파악함으로써 원활한 대응을 준비해야 함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종료됨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국 ESG기준원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원 목적으로 2024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을 분석한 결과<sup>1)</sup>를 살펴보고 지배기구 고려사항을 제시함
- 2024년 1분기 총 371사의 주주총회 안건 분석 결과, 총 2,50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안건은 임원 선임 안건(1,257건, 50.2%)으로 나타남
  - KCGS는 2,504건 중 344건(13.7%)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하였으며, 안건 별 반대 권고율은 전년(14.7%) 대비 1%p 감소함

<표 1> 2024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sup>2)</sup>

구분	전체	재무제표 이익배당	정관 변경	임원선임										이사 보수 한도	감사 보수 한도	기타 비정기 상정 안건*
				이사회				감사기구			계	이사 보수 한도	감사 보수 한도			
				사내 이사	기타 비상무 이사	사외 이사	감사위원 이되는 사외이사	계	감사 위원	감사						
반대 권고수	343	25	44	40	3	56	27	126	36	27	63	189	55	1	29	
상정 안건수	2,501	380	247	458	68	346	124	996	196	62	258	1,254	372	147	101	
'24년 반대 권고율(%)	13.7	6.6	17.8	8.7	4.4	16.2	21.8	12.7	18.4	43.5	24.4	15.1	14.8	0.7	28.7	
'23년 반대 권고율(%)	14.7	9.4	14.2	4.4	4.2	14.9	12.8	9.5	14.5	40.0	18.1	11.5	32.2	0.7	28.3	
'22년 반대 권고율(%)	17.4	11.6	13.9	5.7	3.2	19.7	18.9	12.5	19.3	40.4	23.2	14.9	36.5	0.0	31.2	

\* 임원퇴직금지규정 제·개정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건, 주식분할 건, 자본준비금 감소 건 등

1), 2) 한국ESG기준원, 「2024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2024.04.26

## IV. 주요 규제 동향 ②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및 지배기구 고려사항

#### 이익배당

- 배당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 380개 중 과소배당으로 인해 KCGS가 반대투표를 권고<sup>3)</sup> 한 기업은 25건(6.6%)이며 최근 3년간 반대 권고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11.6% → 9.4% → 6.6%)를 보임
  -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올해 초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발표<sup>4)</sup> 되면서 주주환원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 및 주주환원 강화 등을 시행하는 회사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정관변경

- 248개의 정관변경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주주권리 희석이나 보호 미비 등의 우려가 있는 44개 안건(17.7%)에 대해 반대투표가 권고됨

#### 이사선임

- 이사(임원)선임 안건은 996건이 상정되었으며 126건(12.7%)이 반대권고를 받아 반대 권고율이 전년(9.5%) 대비 3.2%p 증가하였으며, 이 중 사외이사에 대한 반대 권고율(16.2%)은 전년(14.9%) 대비 증가함
  - 사외이사 선임 건의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독립성 훼손 우려가 반대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해당 사유의 반대 비중은 감소함(60.8% → 55.4%)
  - 여성이사 할당제가 법제화<sup>5)</sup> 된 이후 두 번째 개최된 정기주총에서도 법 적용 대상기업 중 여성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기업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여성이사 선임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가 없어 강제성이 떨어지는 데서 기인할 수 있음

<표 2> 2022 ~ 2024 사외이사 반대사유별 안건 수 및 비율 <sup>6), 7), 8)</sup>

반대사유	2024		2023		2022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법령상 결격사유·충실성 우려	18	19.6%	19	24.1%	11	12.4%
이해관계 등 독립성 훼손	51	55.4%	48	60.8%	54	60.7%
장기연임*	1	1.1%	-	-	7	7.9%
전문성 결여	-	-	-	-	3	3.4%
기타**	17	18.5%	11	13.9%	14	15.7%
성별구성·다양성법률유반	5	5.4%	1	1.3%	-	-
합계	92	100%	79	100%	89	100%

\*신규 임기를 포함하여 재임하는 연수가 6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계열회사에서의 재직 기간도 포함

\*\* 행정적·사법적 제재, 회사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과도한 비감사용역비 등의 안건 포함

3) KCGS 의결권가이드라인(2024.02)은 배당금 지급 안에 대해 회사의 현재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계획, 동종업계 배당수준, 자본배분(정책), 배당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수준이 회사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찬성을 권고

4) 금융위원회, 법무부,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2023.01.31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6) 한국ESG기준원, 「2024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2024.04.26, 7) 한 개의 안건에 두 개 이상의 반대사유가 적용될 수 있음, 8) 분리선출 사외이사 선임 안건 포함

## IV. 주요 규제 동향 ②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및 지배기구 고려사항

####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 감사 선임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각각 43.5%, 18.4%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3.6%p, 3.9%p)하였으며, 감사 선임 안건은 전체 안건 중 가장 높은 반대율을 보임
  - 감사 선임의 반대사유로는 '22년, '23년에 이어 장기연임<sup>9)</sup>이 가장 높은 비중(51.9%)으로 나타났으며, 이해관계 등 독립성 훼손 비율은 37.0%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함
  - 감사위원 선임 건의 경우, 최근 3년간 독립성 훼손에 따른 반대권고가 가장 높은 비중이고, 작년 대비 법령상 결격사유로 인한 반대권고율이 11.1%p 상승함
  - 감사위원회 4회 미만 개최로 인한 반대 권고율은 작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는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요구됨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나타남<sup>10),11)</sup>

<표 3> 2022 ~ 2024 감사 반대사유별 안건 수 및 비율<sup>12)</sup>

반대사유	2024		2023		2022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장기 연임	14	51.9%	13	76.5%	14	60.9%
이해관계 등 독립성 훼손	10	37.0%	1	5.9%	3	13.0%
부적절한 겸임·낮은 출석률	3	11.1%	2	11.8%	4	17.4%
기타	0	0%	1	5.9%	2	8.6%
합계	27	100%	17	100%	23	100%

\*한 후보에 여러 반대사유가 적용될 수 있어 반대사유 합계는 반대권고 합계를 초과

<표 4> 2022 ~ 2024 감사위원 반대사유별 안건 수 및 비율<sup>13)</sup>

반대사유	2024		2023		2022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이해관계 등 독립성 훼손	40	55.6%	25	52.1%	41	60.3%
부적절한 겸임·낮은 출석률	1	1.4%	7	14.6%	7	10.3%
법령상 결격사유	8	11.1%	0	0.0%	1	1.5%
감사위원회 4회 미만 개최	6	8.3%	2	4.2%	3	4.4%
과도한 비감사용역 보수	5	6.9%	7	14.6%	3	4.4%
기타	12	16.7%	7	14.6%	13	19.1%
합계	72	100%	48	100%	68	100%

\*한 후보에 여러 반대사유가 적용될 수 있어 반대사유 합계는 반대권고 합계를 초과

9) 장기연임은 경영진과의 독립성을 저해하여 감사가 경영진의 업무를 충실히 감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10)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권장

11)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감사위원회를 연 4회 미만 개최시 해당 감사위원장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하도록 권고함

12),13) 한국ESG기준원 「2024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2024.04.26

## IV. 주요 규제 동향 ②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및 지배기구 고려사항

#### 이사보수한도

- 상정된 안건 372건 중 55건(14.8%)에 대해 반대 권고하여 반대 권고율이 전년(32.2%)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함
  - 최근 이사보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다수 나타남
  - 이사보수한도승인제도는 주주와 경영진의 인센티브 체계를 일치시켜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의미가 있으나 대부분의 분석기업에서 보수 관련 공시수준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아, 주주 입장에서 상정된 보수 한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임원퇴직금지규정

- 임원퇴직금지규정 제·개정 안건을 상정한 기업은 32사이며, 이 중 과도한 퇴직금 지급 우려 등으로 반대투표가 권고된 기업은 9사(28.1%)임
  - 퇴직금은 이사보수의 한 종류로 발생시점의 예측이 어려운 특성에 따라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고 해당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일부 기업은 지급 의결주체를 공개하지 않거나 대표이사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 퇴직금이 과다하게 책정되더라도 주주가 이를 견제하기 어렵고, 배당액을 감소시킬 수 있어 보수를 통한 지배구조 통제 기능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

- 전체 51건의 안건 중 20건(39.2%)에 대해 반대투표가 권고되었는데, 행사요건이 성과와 연계되지 않거나 장기보유를 유도하지 않아 반대권고한 경우가 대다수(18건, 90.0%)임
  - 주식매수선택권은 장기적인 경영판단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한 이사에게 가치상승분을 분배하는 보상제도로, 성과지표와 연계하며 장기성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전량을 일시에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sup>11)</sup>
  - 독립성이 결여된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경영진과 결탁하여 일탈할 가능성이 있어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함

#### 주주제안

- 11사에서 총 34건의 주주제안<sup>12)</sup>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18건(52.9%)의 주주제안 안건에 찬성투표가 권고되었는데,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에 따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관련 안건이 주목을 받음<sup>13)</sup>

11) 상장회사협의회, 「월간상장」,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실무”, 2003

12) 소수주주가 일정사항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

13) 주주제안 안건은 배당(2건), 정관 변경(3건),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선임(7건),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15건), 감사 선임(2건), 기타 안건(5건)이며 이중 5건은 자기주식 소각의 건과 주주총회 결의로 자기주식 소각을 가능토록 하는 정관변경으로 나타남



## IV. 주요 규제 동향 ②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및 지배기구 고려사항

-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적극적인 주주행동주의 이행방식 중 하나인 주주제안이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음

#### 시사점

- 주주총회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관심 증대와 주주환원 및 ESG 경영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반대권고율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지 않는 안건이 상정된 경우들이 있음

<표 5> 2024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sup>14)</sup>

구분	내용
정관변경	• 회사는 주주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는 안건 상정 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주주와의 소통 필요
이사선임	• 자본시장법 적용대상기업은 여성이사 선임의무를 적극 이행함으로써 이사회 다양성 확대 노력 필요
감사(위원) 선임	• 감사(위원)의 경영진 감시의무를 고려하여 후보상정 단계에서부터 독립성 확보 노력 요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 일반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건 상정배경·목적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이익배당	• 2024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고서 기재사항에 배당절차 개선여부, 배당규모 결정에 관한 판단근거 등이 추가되어 관련 공시 증가가 예상

#### 정기주주총회 관련 지배기구 고려사항

-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와 주주총회 개최에 수반되는 주요사안을 검토할 의무가 있음에 따라 의안 및 서류에 부당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상유무를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함(상법 제413조)
  -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sup>15)</sup>
- 감사위원회는 주주제안 등의 사안이 발생할 때 논의되는 주요내용이 회사와 이해관계자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행동주의의 동향을 탐색하고 파악함으로써 원활한 대응을 준비해야 함
- 감사위원회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자문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회사가 생성하는 공시정보의 완전성을 점검해야 함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생성되는 정보가 투자자에게 착오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지 주시해야 되므로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의견을 제시하고, 공시의 내부통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감사위원회는 최근 주주제안권 행사 관련 공시서식 개정(24.4.12 시행) <sup>16)</sup> 에 따라 신규 기재사항(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논의내용 등)이 완전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살필 것이 권장됨

14) 한국ESG기준원, 「2024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2024.04.26

15)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VI.2.2.5

16) 금융감독원, 「주주제안권 행사현황 및 주주총회 논의 결과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2024.04.12

## V. FAQ ①

### 2023 ACGA 한국 기업지배구조 평가 동향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Q.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지배구조가 지목됩니다. 2023년 ACGA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선정한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은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평가 결과에 따른 시사점과 과제는 무엇인가요?

- 2023년 ACGA<sup>1)</sup>가 선정한 기업지배구조 평가(CG watch)에서 한국은 아시아 12개국 중 8위로 선정되었고, 이는 지난 2018년, 2020년에 머무르던 9위에서 1단계 상승한 결과임<sup>2)</sup>
  - 2023년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종합점수는 57.1%로 전기 대비 4.2%p 상승함
- 부문별 평가결과를 보면, 투자자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3위로 선정됨
  - 전기(3위) 대비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고, 반대 의결권 행사 시 이유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음
  - 행동주의 펀드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일본과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ACGA는 이러한 요소는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함<sup>3)</sup>
- 이처럼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의미있는 진전이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제도(9위), 상장기업(9위), 시민사회 및 언론(10위) 부문에서 저평가를 받음
  - 상장사 ESG 공시의 개선은 2025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ACGA가 수년간 제기해 온 문제인 소액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는 점이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됨<sup>4)</sup>
  - 구체적으로 보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시 내부이사도 위원장 선임이 허용되는 점, 전직 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냉각기간(쿨링오프)이 2년에 불과한 점,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부재로 인수합병 과정에서 모든 주주가 공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약점으로 지적됨<sup>5)</sup>
- CG Watch가 제시하는 한국의 개선 과제는 지배구조 로드맵 설정, 공공협의회 의견수렴 프로세스 개선, ESG공시 의무화 조기 시행,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 사내이사를 포함한 이사교육 강화 등이 있음<sup>6)</sup>

1)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아시아 전역에서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관행을 만들기 위해 투자자, 기업 및 규제기관과 협력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2년마다 아시아 11 개국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평가보고서(CG Watch)를 발간하고 있음

2) ACGA, 「CG WATCH 2023 - A new order : Biggest ranking reshuffle in 20 years」, 2023

3) 비즈워치, "축구는 잘 하는데, 지배구조는 아시아 최하위권인 이유?", 2022.12.09

4), 5), 6) ACGA, 「CG WATCH 2020 - Future promise : Aligning governance and ESG in Asia」, 2021

# V. FAQ ①

## 2023 ACGA 한국 기업지배구조 평가 동향

-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시행을 준비중이며, 물적분할시 소수주주 보호 강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향후 CG Watch 순위 개선이 기대됨
- 밸류업을 먼저 시행한 일본의 경우 2023년 평가에서 2위로, 전기대비 3단계를 급상승하여 가장 큰 변동을 보였는데,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의지와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음

<그림 1> CG Watch 기업지배구조 순위 <sup>7,8)</sup>



7) ACGA, 「CG WATCH 2020 - Future promise : Aligning governance and ESG in Asia」, 2021

8) ACGA, 「CG WATCH 2023 - A new order : Biggest ranking reshuffle in 20 years」, 2023

## V. FAQ 2

###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Q. 국내 상장사 ESG 공시 담당자입니다. 최근 발표된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하는 첫해에 이전 기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나요?

-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4.30 발표)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선택 및 경과 규정을 둠<sup>1)</sup>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란 일반목적재무보고<sup>2)</sup>의 일부로,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보고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sup>3)</sup>
  -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는 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포함되며, 해당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와 관련된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 보고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는 4가지 핵심요소(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라 공시해야 함

구분	내용
지배구조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
전략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
위험관리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 여기에는 기업이 설정한 모든 목표, 또는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모든 목표에 대한 진척도가 포함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제2호의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제1호의 부록 E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공시함

1)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2024.04.30

2) 주요 정보이용자(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역자와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시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보고

3) 한국회계기준원,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주요 FAQ」, 2024.04.30

## V. FAQ 2

###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 <표 1>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sup>4)</sup>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 부록 E.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E1) 기업이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그러한 정보 공시는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다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특정 상황에서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한,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 (1) 거버넌스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문단 E2~E3 참조)
- (2) 전략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문단 E4~E18 참조)
- (3) 위험관리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문단 E19~E20 참조)
- (4) 지표 및 목표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기업이 설정한 모든 목표, 또는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모든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포함)(문단 E21~E29 참조)

-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비교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기준은 기업이 적용 첫 보고기간에 비교기간(직전 보고기간)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24년 회계연도의 정보에 대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25년 공시)한다면, '24년 전의 정보(즉, '23년까지 정보)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 <표 2>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sup>5)</sup> -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관련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F3) 기업은 최초 적용일 전 모든 기간에 대해 이 기준서에서 명시한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처음 공시하는 회계연도 포함)에 대해 비교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C3) 기업은 최초 적용일 전 모든 기간에 대해 이 기준서에서 명시한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해 비교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4), 5)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2024.04.30

# VI. 주요 행사

## 2024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 세미나 개요

- **대상**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감사위원·감사·C레벨 등
- **일시** 2024년 6월 3일 (월) 14:00 ~ 17:20 - 16시 30분부터 네트워킹 세션 제공
- **장소**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 The Forum at IFC (3F)
- **문의** krccg@deloitte.com | 02-6099-4275

\*교육확인서 발급 및 KICPA CPD 등록 가능



### 세미나 프로그램

- **대주제** 국내 내부통제 현황 및 감독 방향

시간	내용	담당
14:00~14:05	Opening Remarks	<b>홍종성</b>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
14:05~14:30	<b>세션 1. 기조 강연</b> 사례로 짚어보는 고의 또는 중과실 이슈 및 시사점 (내부통제 중심으로)	<b>박재환</b>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14:30~14:55	<b>세션 2.</b>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	<b>장정애</b>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55~15:05	Break Time	
15:05~15:30	<b>세션 3.</b>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 방향	<b>권대현</b>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감사 및 자문그룹 파트너
15:30~15:45	<b>세션 4.</b>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우먼 인 더 보드룸, 2024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b>김한석</b>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15:45~15:55	Break Time	
15:55~16:25	<b>세션 5. 패널 토론</b> 자금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현황 및 준비사항	<b>유승원 좌장</b>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b>김지은</b> 신한금융지주 감사파트장 <b>손창완</b>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b>손혁</b>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공로상) 수상자 &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 <b>이승영</b>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 개발 및 데이터분석 그룹 수석위원
16:25~16:30	Closing Remarks	<b>장수재</b> 한국 딜로이트 그룹 감사 및 회계자문본부 본부장
16:30~17:20	<b>네트워킹 세션</b> (다과 제공)	

\* Q&A는 각 세션에 포함됩니다.

\*\* 본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VI. 주요 행사

### 이사회 거버넌스 설문조사 - 'AI/생성형 AI에 관하여'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 설문조사 개요

- **실시시기** 현재 진행 중 ~ 2024년 6월 15일까지
- **대상** 기업 사외이사, 최고경영진, 감사 등
- **설문항목**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텍스트, 이미지, 기타 미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함
  - 이사회 구성, 지식 및 교육
  - 거버넌스, 아젠다 및 집중영역
  - 이사회 감독 및 관리방향
  - 비즈니스 영향, 전략, 리스크, 이해관계자 및 규정
- **참여혜택**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가입 시
  - 정기 글로벌 웨비나 초대
  - 글로벌 정기 발간물 송부

설문조사

QR 코드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hansukim@deloitte.com](mailto:hansukim@deloitte.com)



##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hyunjeong@deloitte.com](mailto:hyunjeong@deloitte.com)



##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hbkim@deloitte.com](mailto:hbkim@deloitte.com)



##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junoh@deloitte.com](mailto:junoh@deloitte.com)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krccg@deloitte.com](mailto: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